

##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25호  
개정 1993. 5.

상공자원부에서는 현재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확인받아 업체가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고시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 집 자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다만 멀티형, 인버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만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등급표시 신고)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중 전기냉장고 또는 전기냉방기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등급산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공업진흥청을 경유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산정시 기초한 시험 성적서 또는 그 사본(전기냉장고의 경우에는 월 소비전력량 및 냉장실, 냉동실의 유효 내용적(실측치), 전기냉방기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정격냉방능력(실측치)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기관의 확인을 거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중 조명기기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등급산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램프의 정격소비전력과 광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에너지관리공단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 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제2호 서식 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호 서식)

등 급 표 시 신 고 서			
업 체 명 :			
소 재 지	본 사		전 화
	공 장		전 화
대표자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제조업등록	품 명		
	제 조 구 분		
형 식 승 인	품 명		
	승 인 번 호		
소비전력량 및 효 율	품 명		
	규 격		
	소비전력량 및 효 율 (실 측 치)		
표 시 등 급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p>			
구비서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1통		

(제2호 서식)

효율표시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체명 :			
소재지	본사		전화
	공장		전화
대표자명 :			주민등록 번호
제조업등록	품명		
	제조구분		
형식승인	품명		
	승인번호		
소비전력량 및 효율	품명		
	규격		
	소비전력량 및 효율 (실측치)		
표시등급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소비효율표시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효율표시 및 등급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귀하</b></p>			
구비서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1통		

제 8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등급표시 의무 및 표시방법)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기준에 의한 등급을 별표 3의 표시방법 및 크기에 따라 당해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8조 별표 2의 II. 전기냉방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III. 능력이변형 및 2압축기형, 회전수제어형 전기냉방기를 신설한다.

II. 정속도 단압축기형 전기냉방기(정속도 단압축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은 KSA0021에 따라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구한다.)

III. 능력이변형 및 2압축기형, 회전수제어형 전기냉방기(능력이변형 및 2압축기형, 회전수 제어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은 KSA0021에 따라 소수점세째자리까지 구한다.)

### 1. 목표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달성기한

#### 가. 목표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단위 : Kcal/hw)

구	분	목표에너지소비효율
일 체 형		2.420
분	정격냉방능력 3,550Kcal/h미만	2.630
	정격냉방능력 3,550Kcal/h이상 9,000Kcal/h미만	2.300

나. 달성기한 : '95. 12. 31까지

### 2.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적용일시

#### 가.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단위 : Kcal/hw)

구	분	최저에너지소비효율
일 체 형		2.210
분	정격냉방능력 3,550Kcal/h미만	2.420
	정격냉방능력 3,550Kcal/h이상 9,000Kcal/h미만	2.100

나. 적용일시 : '94. 1. 1부터

### 3. 등급부여 기준

#### 가. 일체형인 것

(단위 : kcal/hw)

에너지소비효율(EER)	등 급
2.520 < EER	1
2.310 < EER ≤ 2.520	2
2.100 < EER ≤ 2.310	3
2.000 < EER ≤ 2.100	4
EER ≤ 2.000	5

나. 정격냉방능력 3,550kcal/h미만으로서 분리형인것

(단위 : kcal/hw)

에너지소비효율(EER)	등 급
2.940 < EER	1
2.730 < EER ≤ 2.940	2
2.520 < EER ≤ 2.730	3
2.310 < EER ≤ 2.520	4
EER ≤ 2.310	5

다. 정격냉방능력 3,550kcal/h이상으로서,  
9,000kcal/h이하로 분리형인것

(단위 : kcal/hw)

에너지소비효율(EER)	등 급
2.630 < EER	1
2.420 < EER ≤ 2.630	2
2.210 < EER ≤ 2.420	3
1.890 < EER ≤ 2.210	4
EER ≤ 1.890	5

제 8 조 별표 2의 III. 조명기기(조명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은 KSA0021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를 IV. 조명기기(조명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은 KSA0021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로 한다.

제 11 조 제 2항, 제 3항, 제 4항, 제 5항 및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는 시판품 조사가 불가능할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의 이행상태
2. 제조업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효율을 측정 한 값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실측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할 경우 시료의 수량, 판정개수,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결과,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⑦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미달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 조(등급의 조정)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 11 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하더라도 시료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또는 소비전력량)에 따른 등급이 신고한 등급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제품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을 표시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별표 4와 별표 5를 별표 4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향생각 부모생각  
우리모두 일손돕기**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보상이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선진공업국보다 저율의 관세부과혜택을 주는 관세상의 특혜조치를 말한다.

〈별표 4〉

시료의 수량, 합격판정개수,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구 분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조 명 기 기		
			백 열 전 구	형 광 램 프	
시 료 수	n=2	n=2	n=20	n=10	
합격판정개수	(c=0)	(c=0)	(c=2)	(c=1)	
검사항목	필수검사 항목	월간소비전력량	에너지소비효율	정격소비전력광속	정격소비전력광속
	선택검사 항목	유효내용적	월간소비전력량	수명	—
필수검사항목의허용 오차 범위	업체가 신고한 실측 치의 115%이내여야 함	업체가 신고한 실측 치에 대해 10%를 벗 어나지 않아야 함	KSC7501 허용오차 범위를 만족해야 함	KSC7601에 정한 허 용오차 범위를 만족 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3.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중전의 동력자원부고시 제92-71호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  
시에 관한 규정』중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민원불편 직소전화 설치**

공업진흥청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체 및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원행정체신을 위한 건의  
와 불법·부당한 처리 및 비위등을 신고하며, 산업표준화법등 5개 법령상 행정규제완화를 건의  
할 수 있는 민원불편 직소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공업진흥청장이 해당국실(기관)에 직접 지시하여 그 처  
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최단시간내에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니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번호 : (02) 502-0110